

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0.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- 아 래 -

명칭	형식번호	자율안전 확인번호	제 조 자	사업장 소재지	사용금지 기간	사용금지 사유
자동차 정비용 리프트	HL-26E	19-AE1EZ -10687	(주)팬스타 엔터프라이즈 김포공장	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용정로 45	'26.8.5. ~ 10.31.	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제어회로 자율안전 기준에 부적합
	HL-26E(F)	25-AE1EZ -01167				
	HL-26K	13-AE1EZ -00002				
	HL-28E(F)	25-AE1EZ -00433				

끝.